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

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47명”을 “48명”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29”를 “622”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2”를 “6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8”을 “59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141”을 “7,0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140”을 “7,0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111”을 “7,01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20명
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3)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4)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5)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7)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동관서)	
8)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9)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별표 6 제3호,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4.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356
일반직 계	356
5급 이하	356

10. 제43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6
일반직 계	6
5급 이하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

명(6급 16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u>47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 <u>48명</u>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 ② 삭제	제43조(한시정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	④ ----- -----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⑥ ~ ⑩ (생략)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2월 29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 ----- --- <u>2025년 12월 31일</u>----- ----- -----. ⑤ ----- ----- ----- ----- <u>2025년 12월 31일</u>----- -----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u>2026</u> <u>년 2월 28일</u>-----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9</u>	<u>622</u>	-7
•	•	•	
•	•	•	
별정직 계	<u>5</u>	<u>4</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u>4</u>	<u>3</u>	-1
일반직 계	<u>622</u>	<u>616</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8</u>	<u>592</u>	-6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41</u>	<u>7,046</u>	-95
·	·	·	
·	·	·	
일반직 계	<u>7,140</u>	<u>7,045</u>	-9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111</u>	<u>7,016</u>	-9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